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박병일 외 1명 소유물건

[2025타경50775, (경매2계)]

NE2025-0707-0002

2025-08-04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현정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

전화:033)252-8338

전송:0505)182-4855



(토지, 건물)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고병남 (인)

(주) 나라 감정평가법인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박정관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오억삼백일십일만이십원정 (₩503,110,020.-)		
-------	-------------------------------	--	--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현정	감정평가목적	경매	
제출처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또는 대상업체명	박병일 외 1명 소유물건 (2025타경50775)	감정평가조건	-	
목록 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24	2025.07.07~ 2025.07.24	2025.08.04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40.5	토지	440.5	165,000	72,682,500
건물		194.94	건물	194.94	2,208,000	430,427,520
		이	하	여	백	
합계						₩503,110,02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가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박공관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 감정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소재 ‘박수근미술관’ 남서측 근 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춘천지방법원의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조건 없음.

4. 감정평가방법

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음.

나.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으로 토지가액을 산출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다. 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2개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부분(계획관리지역)은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였는바,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건물가액을 산출하였으며, 건물의 경우 거래사례가 포착되지 않는 등 거래사례비교법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5.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7월 24일자임.

6. 실지조사 ·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지조사 착수일은 2025년 07월 07일자이고, 가격조사완료일은 2025년 07월 24일자로 귀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7. 그 밖의 사항

본건 건물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상태여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도면, 외관조사 및 탐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441번지									
토 지	기호	지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및 지 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1	441	대	440.5	주상용 건부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세로 (가)	정방형 완경사
	합 계			440.5	-				
건 물	기호	구 조		연면적 (㎡)	용 도		층 수		사용승인일자
	2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194.94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2022.08.17
	합 계			194.9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토지가액 산출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나. 비교 표준지 선정

(1) 선정 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2) 표준지공시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시기준일 : 2025. 01. 01)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양구읍 안대리 210-5	대	660	단독주택	생산 관리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35,300
#B	양구읍 정림리 377-2	대	330	단독주택	계획 관리	세로 (불)	세장형 완경사	37,700

(3) 비교표준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 중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호 #A】 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5.01.01~25.07.24) (생산관리지역)
2025.01.01 ~ 2025.06.30 : 0.263
2025.06.01 ~ 2025.06.30 : 0.022
$(1 + 0.00263) * (1 + 0.00022 * 24/30)$ ≈ 1.00281
※ 지가변동률 고시 기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2025년 07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 발표되어 2025년 06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
결정 의견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주택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 근 조 건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 경 조 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맹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

기 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1.00	1.08	1.25	1.08	1.16	1.00	1.691
결정 의견	- 기호(1): 본건은 비교표준지(#A)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등), 환경조건(인근환경 등), 획지조건(형상 등) 및 행정적조건(공법상제한)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2004.05.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2003.07.25 선고 2002두5054 외)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 등과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2) 가격자료

①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토지평가액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a	정림리 ***	대	539.4	생산관리지역	154,000 (평균단가)	83,067,600	매각 25.04.30
#b	정림리 ***-*	대	538.6	계획관리지역	166,000 (평균단가)	89,407,600	매각 25.04.30
#c	안대리 ***-*	대	278	생산관리지역	133,000	36,974,000	담보 23.05.08

※ 토지단가 = 토지평가액 / 토지면적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②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토지거래액 (원)	거래시점
#1	정림리 ***-*	대	646.2	생산관리지역	144,000	93,052,800	24.02.14
#2	정림리 ***-*	대	440.3	계획관리지역	164,000	72,209,200	24.11.25
#3	안대리 **-*	대	413	생산관리지역	121,065	50,000,000	24.11.02

※ 토지단가 = 거래가격 ÷ 토지면적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표준지 가액과 사례기준 가액과의 격차

① 산식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평가}}{\text{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 \frac{\text{사례토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의비교} \times \text{개별요인의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② 사례 선정

선정 사례	평가사례 #a
선정 의견	상기 인근 사례 중 비교표준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비교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음.

③ 표준지 #A 격차 산정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a	154,000	-	1.00086	1.00	0.632	97,412	2.752
#A	35,300	-	1.00281	-	-	35,399	
사정보정	별도의 보정요인 없음.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생산관리지역) 2025.04.30. ~ 2025.07.24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0.93	0.83	0.91	0.90	1.00	0.632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a)와 비교시 접근조건(접근성 등), 환경조건(인근환경 등), 획지조건(형상 등) 및 행정적조건(공법상제한)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2.75
결정 의견	상기에서 산정한 격차율과 본 건 인근의 지가수준, 거래 사례, 평가사례 및 감정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75% 상향 보정함.

사. 토지 시산가액 산정

(1) 토지 단가 산정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35,300	1.00281	1.00	1.691	2.75	164,615	165,000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정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 고
1	440.5	165,000	72,682,500	-
합계	440.5	-	72,682,5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개요

감정평가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사례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감정평가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결정되는 가액임.

나. 거래사례 선정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토지거래액 (원)	거래시점
#1	정림리 ***-*	대	646.2	생산관리지역	144,000	93,052,800	24.02.14
#2	정림리 ***-*	대	440.3	계획관리지역	164,000	72,209,200	24.11.25
#3	안대리 ***-*	대	413	생산관리지역	121,065	50,000,000	24.11.02

※ 토지단가 = 거래가격 ÷ 토지면적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사례 선정의견	위 거래사례는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 동일수급권내 소재하는 사례로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 등 본건과 비교 유사성이 높은 위 거래사례 #1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	--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치	1.00
결정 의견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라. 시점수정

구분	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생산관리지역	2024.02.14 - 2025.07.24	0.987	1.0098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지역요인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
결정 의견	동일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바. 개별요인비교

기 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1.00	1.00	1.00	1.07	1.06	1.00	1.134
결정 의견	- 기호(1): 본건은 거래사례(#1)와 비교시 획지조건(이용상황 등) 및 행정적조건(공법상제한)에서 우세함.						

사. 토지 시산가액 산정

(1) 토지 단가 산정

기호	거래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44,000	1.00	1.00987	1.00	1.134	164,908	165,0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정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 고
1	440.5	165,000	72,682,500	-
합계	440.5	-	72,682,5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토지가액의 결정

가. 각 방법 의한 시산가액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원)	거래사례비교법(원)	비 고
토지	72,682,500	72,682,500	-

나. 토지가액의 결정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지지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기호	사정면적(㎡)	단가(원/㎡)	토지가액(원)	비 고
1	440.5	165,000	72,682,500	-
합계	440.5	-	72,682,5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건물가액 산출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였음.

2. 재조달원가의 산정

가. 표준단가 결정

①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2024년 기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연수
01-01-01-07	일반주택	목조/목조지붕틀/오지기와	1	1,951,000	40 (35~45)
01-01-01-07	일반주택	목조/목조지붕틀/오지기와	2	1,786,000	40 (35~45)
01-01-06-01	일반주택	철골조/철골지붕틀/ 시멘트기와	3	2,131,000	40 (35~45)

② 표준단가 결정

상기에서 제시된 표준단가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을 고려하되, 실제 투하된 공사비용 및 마감자재의 수준, 기본 설비의 사양 등 건축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표준단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구분	구조	표준단가(원/㎡)	비고
기호(2)	일반목구조	2,300,000	1,2층

나. 부대설비 보정단가 결정

본건 건물 기호(2)에 설치된 위생 급·배수설비 및 LPG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부대설비 내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부대설비 보정단가를 표준단가에 포함하여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재조달원가 산정

상기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보정단가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구 분	표준단가(원/㎡)	보정단가(원/㎡)	재조달원가(원/㎡)	비 고
기호(2)	2,300,000	-	2,300,000	1,2층

3. 감가수정 및 건물단가 결정

가. 감가수정 방법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을 적용하였음.

나. 잔존 내용연수 결정

구 분	사용승인일	총 내용연수	경과연수	잔존 내용연수	비 고
기호(2)	2022.08.17	50	2	48	1,2층

다. 건물단가 결정

구 분	용 도	재조달원가 (원/㎡)	잔존 내용연수	총 내용연수	적용단가 (원/㎡)	비 고
기호(2)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300,000	48	50	2,208,000	1,2층

4. 건물가액 결정

구 분	사정면적(㎡)	단가(원/㎡)	건물가액(원)	비 고
기호(2)	156.74	2,208,000	346,081,920	1층
	38.2	2,208,000	84,345,600	2층
합계	194.94	-	430,427,52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구 분	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440.5	165,000	72,682,500	-
건 물	194.94	2,208,000	430,427,520	-
합 계			503,110,020	-

2. 결정 의견

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으로 동 규칙 제 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토지,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또는 용도	용도지역 또는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 (원/㎡)	금액(원)	
1	강원 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441	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40.5	440.5	165,000	72,682,500	
	소 계						₩72,682,500	
2	강원 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441 [도로명주소] 강원 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57번길 2-97 위 지상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 1층 2층	156.74	194.94	2,208,000	430,427,520	2,300,000 x 48/50
	소 계						₩430,427,520	
	합 계						₩503,110,02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소재 '박수근미술과' 남서측 근거리에서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나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정방형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주상용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노폭 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및 페인팅 마감 등임.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임.
창호: 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2) 1층: 일반건축물대장 도면 상 방2, 주방 및 거실1, 화장실2, 작업실 등임.
기호(2) 2층: 일반건축물대장 도면 상 게스트룸 및 작업실 창고 등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LPG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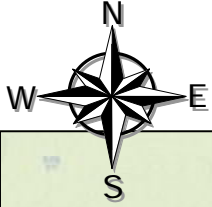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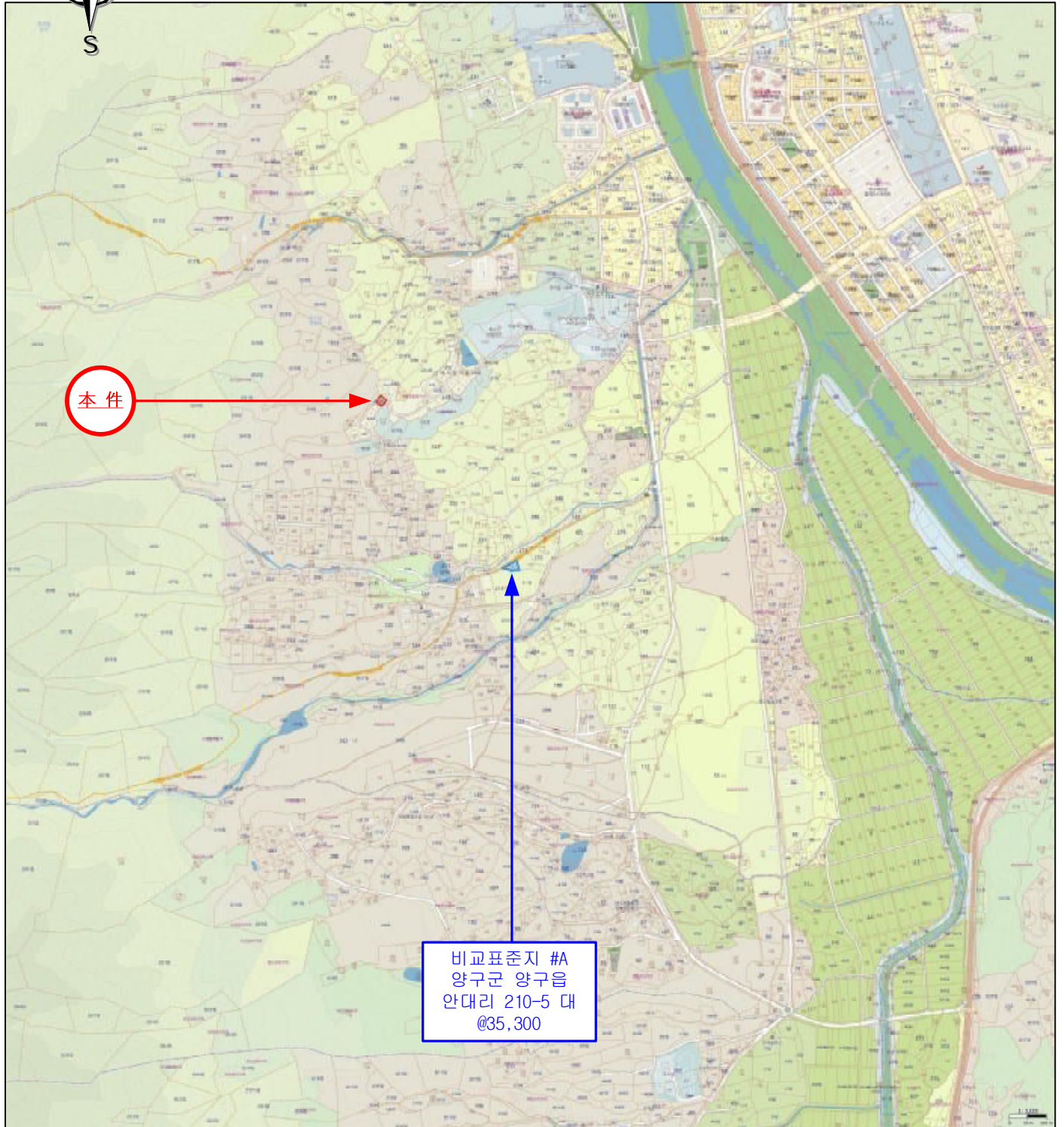
임대관계는 미상임.

위 치 도



소재지 지번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441번지



본건

비교표준지 #A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210-5 대
@35,300

각종사례
표시도

본 건

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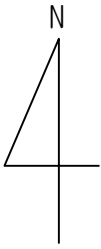
경락사례

방매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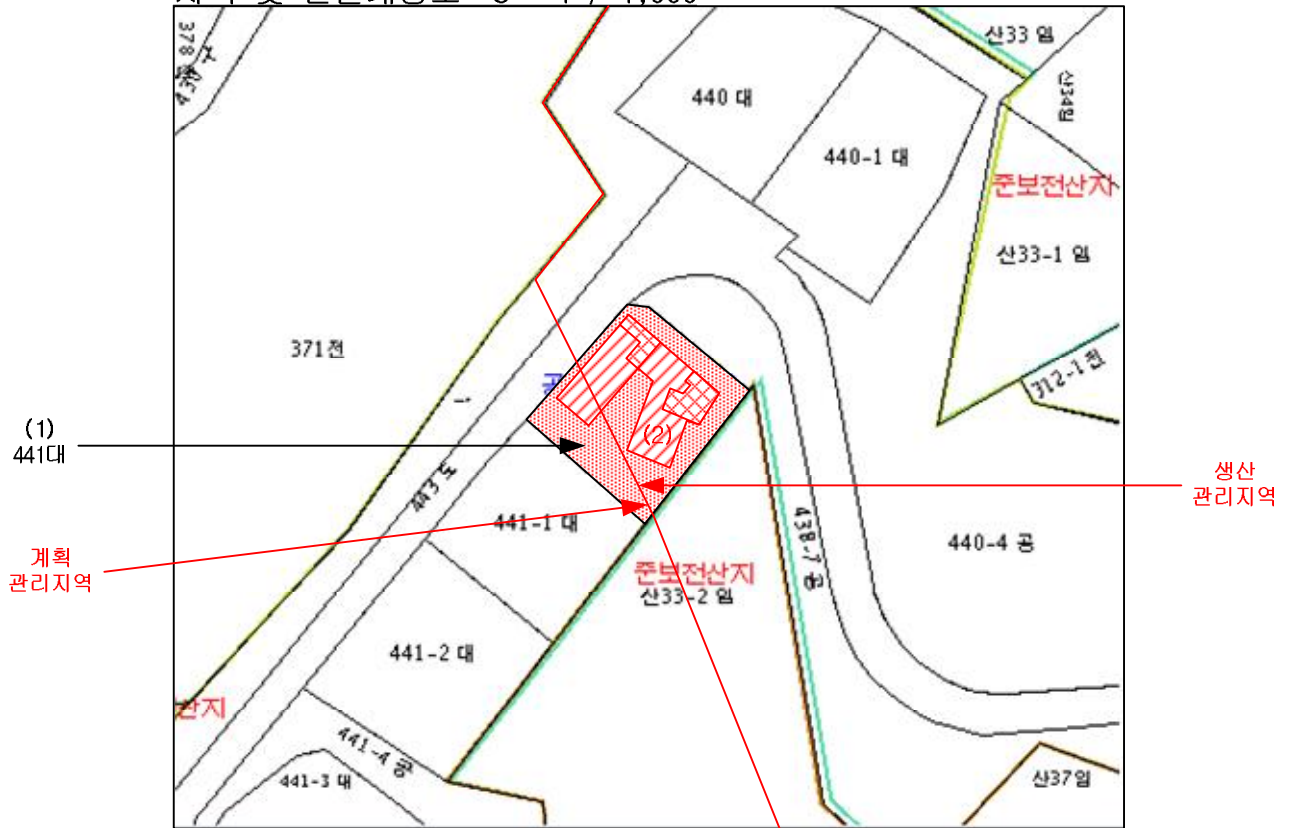
거래사례

평가사례

지적 및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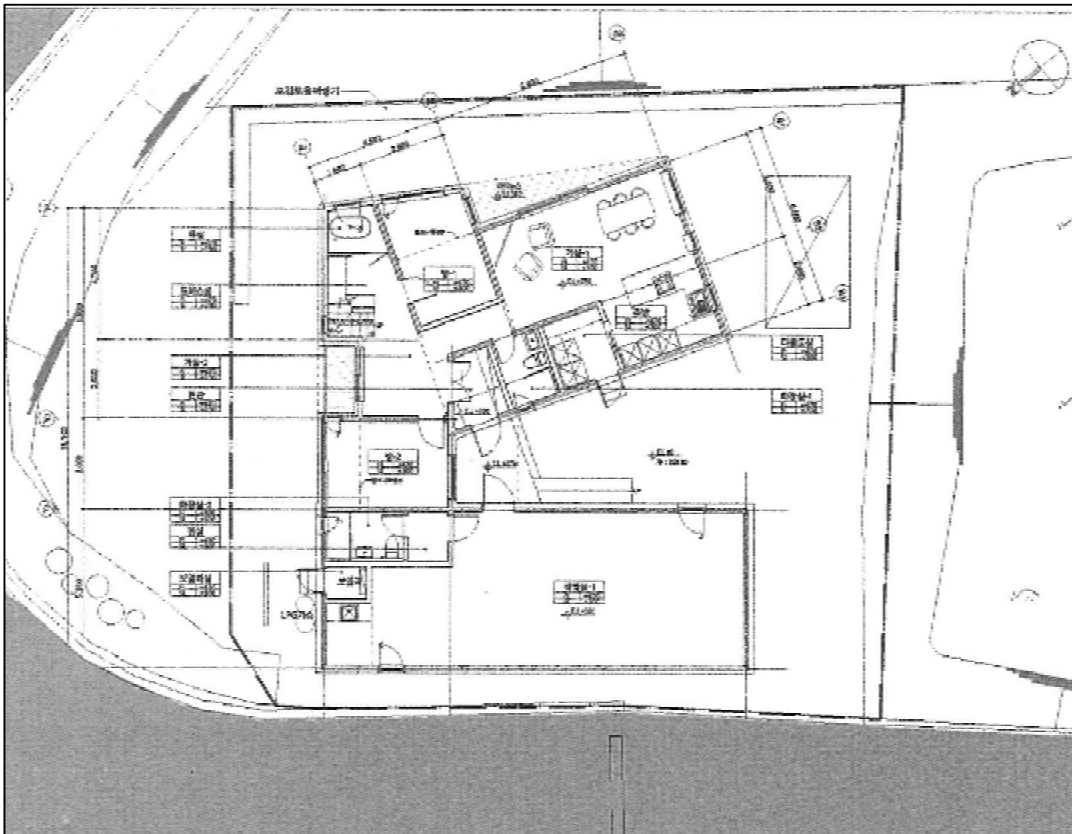


지적 및 건물개황도: S = 1 / 1,000



건물개황도(1)

건물개황도: S = 1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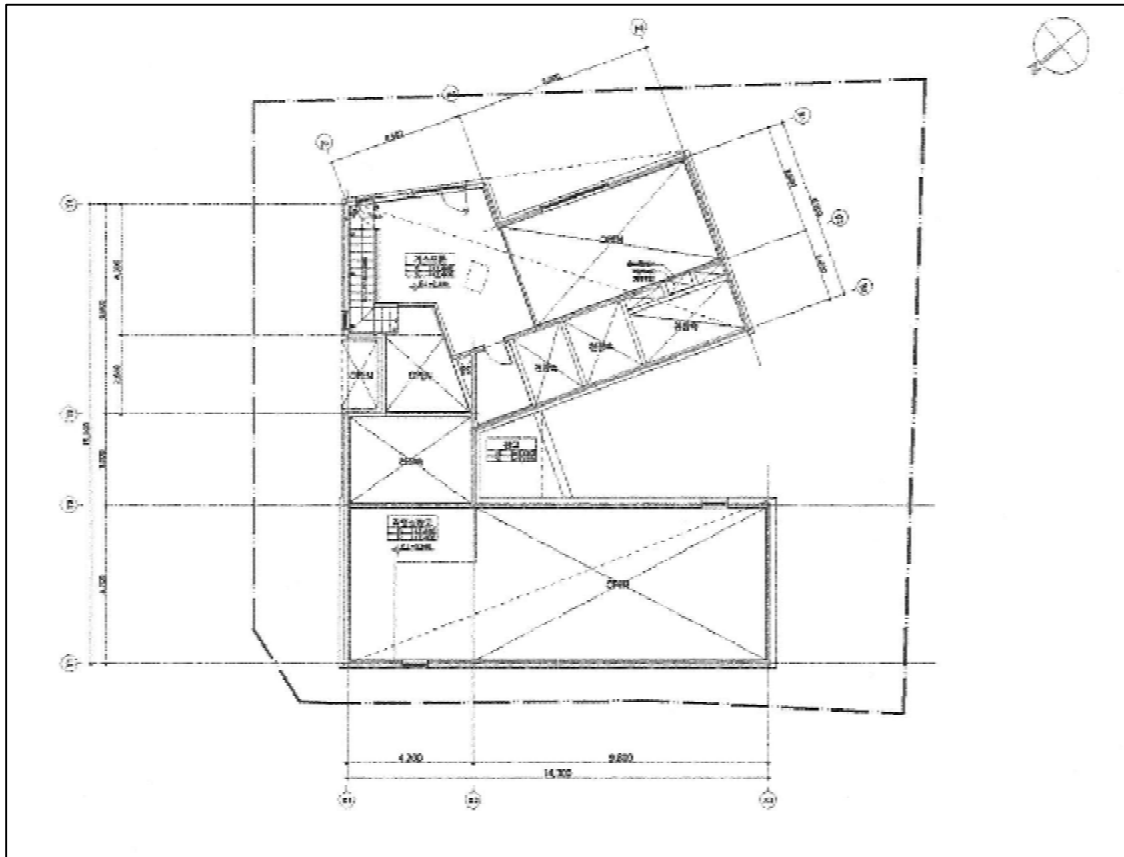
기호(2)
1층

건물면적

기호(2) 1층: 156.74㎡

건물개황도(2)

건물개황도: S = 1 / 200



기호(2)
2층

건물면적

기호(2) 2층: 38.2㎡

사 진 용 지



본건전경



본건전경